

대구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107971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F

변론 종결2017. 1. 10.

판결 선고2017.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54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2015. 12. 23. 제7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G은 1991. 11. 2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 H, 자녀인 원고 A(장녀), I(장남), 원고 B(차남), 원고 C(3남), 원고 D(4남), 원고 E(5남)가 있었다.
 - H은 2002. 10. 28. 사망하였고, 장남 I는 2005. 5. 23. 사망하였다.
 - I가 2005. 5.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피고와 자녀 J, K, L이 I의 상속인이 되었다.
 - G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5. 12. 8. '위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원고들과 J, K, L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다.
 - 한편 경산시 M 전 205㎡는 I의 상속재산이었는데, 2015. 12. 8.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J, K, L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다.
 - 2015. 12. 23.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1.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15. 12. 23. 위 상속재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I 소유 부동산인 경산시 M 전 205㎡ 등 10필지를 N에게 5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2. 23. N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위 매매대금 530,000,000원 중 경산시 M 전 205㎡에 대한 매매대금은 20,200,000원이었는바, 그 대금 20,200,000원과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매매관련 경비 49,800,000원 및 피고가 향후에도 계속 집안 제사를 지내고 분묘수호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 10,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0원(530,000,000원 - 20,200,000원 - 49,800,000원 - 10,000,000원)을 원고들과 피고가 안분하여 75,000,000원씩을 나누어 가졌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통정하여 2015. 12. 8. 위 상속재산을 타에 처분할 때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지분인 각 1/6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같은 날 별지1, 2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 모두를 피고가 소유하는 내용의 가장(假裝)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피고는 그에 터 잡아 2015. 12. 23.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들과 피고가 행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피고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의사표시의 내용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을 피고 명의로 한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음은 다툼이 없고, 다만 이와 같은 합의가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서인지 아니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만 다툼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추가하여 구두약정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일 뿐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N와의 매매계약은 원고 C를 비롯한 원고 측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전부 무효라고 한다면 N와의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결론이 되는바, 원고들도 이를 의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말소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원고들의 그 상속지분 비율대로 권리를 취득한 상황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하되 이를 처분하여 그 상속지분 비율대로 나누어가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7두973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대금을

상속지분 비율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우선 이점에서부터 이유 없다.

나아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본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같은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상속인 G와 함께 거주한 집 또는 그 주변 발인 사실, △원고 본인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이고, 만약 피고가 반대한다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달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할 계획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지분 비율대로 대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약정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와 상속받은 재산을 타에 처분하여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기로 하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모두 자경농인 피고 단독으로 등기를 하여 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정양도소득세 환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추정양도소득세 환급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N에게 매도한 매매목적물에는 전(田)뿐 아니라 대지와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유지원

별지